HILLSTATE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송도랜드마크시티 A15BL) 입주자모집공고

현대건설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8.09.(금)	24.08.19.(월)	24.08.20.(화)	24.08.21.(수)	24.08.27.(화)	24.08.31.(토) ~ 24.09.04.(수)	24.09.09.(월) ~ 24.09.11.(수)

상담 관련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032-833-072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I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경제자유구역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해외건설근로자 특별공급은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8.19.(월)	24.08.20.(화)	24.08.21.(수)	24.08.27.(화)	24.08.31.(토) ~ 24.09.04.(수)	24.09.09.(월) ~ 24.09.11.(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 • 문의 : 032-833-0722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5288호(2024.08.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번지(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A1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대 26층 12개동 총 7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2세대(기관추천 22세대, 경제자유구역 64세대, 다자녀가구 64세대, 신혼부부 38세대, 생애최초 19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경제자 유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4000373	1	084.9400A	84A	84.9400	23.0011	107.9411	72.0530	179.9941	67.3818	160	16	16	16	28	4	14	94	66	9
	2	084.9400B	84B	84.9400	23.0411	107.9811	72.0530	180.0341	67.3818	60	6	6	6	10	1	5	34	26	3
	3	099.6200A	99A	99.6200	27.3239	126.9439	84.5058	211.4497	79.0273	71	-	7	7	-	2	-	16	55	3
	4	099.9800B	99B	99.9800	26.7421	126.7221	84.8112	211.5333	79.3129	137	-	13	13	-	4	-	30	107	7
	5	099.7500C	99C	99.7500	26.3385	126.0885	84.6162	210.7047	79.1304	68	-	6	6	-	2	-	14	54	4
	6	105.3800A	105A	105.3800	28.4157	133.7957	89.3919	223.1876	83.5966	21	-	2	2	-	-	-	4	17	1
	7	105.7300B	105B	105.7300	27.8321	133.5621	89.6888	223.2509	83.8743	98	-	9	9	-	2	-	20	78	5
	8	112.8900	112	112.8900	28.6793	141.5693	95.7625	237.3318	89.5542	22	-	2	2	-	-	-	4	18	1
	9	115.1100A	115A	115.1100	32.8602	147.9702	97.6457	245.6159	91.3153	10	-	-	-	-	-	-	-	10	2
	10	115.1100B	115B	115.1100	32.8602	147.9702	97.6457	245.6159	91.3153	10	-	-	-	-	-	-	-	10	-
	11	115.9800C	115C	115.9800	32.1551	148.1351	98.3837	246.5188	92.0055	8	-	-	-	-	-	-	-	8	-
	12	120.7800	120	120.7800	30.1750	150.9550	102.4555	253.4105	95.8133	30	-	3	3	-	-	-	6	24	3
	13	146.8500T	146T	146.8500	37.3568	184.2068	124.5702	308.7770	116.4943	2	-	-	-	-	-	-	-	2	-
	14	154.9000A	154PA	154.9000	42.5827	197.4827	131.3988	328.8815	122.8803	2	-	-	-	-	-	-	-	2	-
	15	154.9000B	154PB	154.9000	42.5827	197.4827	131.3988	328.8815	122.8803	2	-	-	-	-	-	-	-	2	-
	16	168.0100A	168PA	168.0100	45.0679	213.0779	142.5199	355.5978	133.2803	1	-	-	-	-	-	-	-	1	-
	17	168.0100B	168PB	168.0100	45.0679	213.0779	142.5199	355.5978	133.2808	1	-	-	-	-	-	-	-	1	-
	18	168.9200T	168TA	168.9200	40.9404	209.8604	143.2918	353.1522	134.0022	7	-	-	-	-	-	-	-	7	-
	19	168.2100T	168TB	168.2100	42.7658	210.9758	142.6895	353.6653	133.4389	2	-	-	-	-	-	-	-	2	-
	20	168.4200T	168TC	168.4200	42.7756	211.1956	142.8677	354.0633	133.6055	2	-	-	-	-	-	-	-	2	-
	21	175.8900T	175T	175.8900	42.9616	218.8516	149.2043	368.0559	139.5314	3	-	-	-	-	-	-	-	3	-
	22	186.8900T	186T	186.8900	50.3868	237.2768	158.5355	395.8123	148.2575	2	-	-	-	-	-	-	-	2	-
	23	215.3500T	215T	215.3500	58.3616	273.7116	182.6776	456.3892	170.8485	3	-	-	-	-	-	-	-	3	-
	합계									722	22	64	64	38	15	19	222	500	38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400A	084.9400B	099.6200A	099.9800B	099.7500C	105.3800A	105.7300B	112.8900	115.1100A	115.1100B	115.9800C	120.7800
약식표기	84A	84B	99A	99B	99C	105A	105B	112	115A	115B	115C	120

주택형	146.8500T	154.9000A	154.9000B	168.0100A	168.0100B	168.9200T	168.2100T	168.4200T	175.8900T	186.8900T	215.3500T
약식표기	146T	154PA	154PB	168PA	168PB	168TA	168TB	168TC	175T	186T	215T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구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5%) 계약시	중도금 1회(10%) 2025.03.14	2회(10%) 2025.09.12	3회(10%) 2026.03.13	4회(10%) 2027.05.14	5회(10%) 2027.09.13	6회(10%) 2028.01.14	잔금(35%) 입주시
[illegible]															

■ 유의사항

IV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IV-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IV-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IV-4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IV-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IV-6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V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VIII 참고사항

IX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H-아이숲,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준공인가)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추후 통보	잔금(80%) 입주지정일
84A	36,388,000	3,638,800	3,638,800	29,110,400
84B	36,388,000	3,638,800	3,638,800	29,110,400
99A	39,765,000	3,976,500	3,976,500	31,812,000
99B	35,002,000	3,500,200	3,500,200	28,001,600
99C	36,366,000	3,636,600	3,636,600	29,092,800
105A	39,765,000	3,976,500	3,976,500	31,812,000
105B	35,002,000	3,500,200	3,500,200	28,001,600
112	37,697,000	3,769,700	3,769,700	30,157,600
115A	43,692,000	4,369,200	4,369,200	34,953,600
115B	43,692,000	4,369,200	4,369,200	34,953,600
115C	43,692,000	4,369,200	4,369,200	34,953,600
120	37,697,000	3,769,700	3,769,700	30,157,600
154PA	47,025,000	4,702,500	4,702,500	37,620,000
154PB	47,025,000	4,702,500	4,702,500	37,620,000
168PA	47,025,000	4,702,500	4,702,500	37,620,000
168PB	47,025,000	4,702,500	4,702,500	37,620,000
146T	96,437,000	9,643,700	9,643,700	77,149,600
168TA	77,473,000	7,747,300	7,747,300	61,978,400
168TB	98,670,000	9,867,000	9,867,000	78,936,000
168TC	115,225,000	11,522,500	11,522,500	92,180,000
179T	77,473,000	7,747,300	7,747,300	61,978,400
186T	127,578,000	12,757,800	12,757,800	102,062,400
215T	125,796,000	12,579,600	12,579,600	100,636,8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최초 계약시)	㈜하나은행	2019-2585-339037 *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현대건설(주)
	중도금 / 잔금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사업주체와 계약자 각각 납부)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주)하나은행 / 201-910036-61804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일부 유무상 옵션 반영)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전매시에도 최초 양도인의 발코니 확장여부 계약따른 양수인은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 불가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1-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일반형)
1-2)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고급형)
2) 가전옵션
3) 마감옵션
4) 가구옵션
5) 조명옵션

■ 추가 선택품목 금액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금액	계약금(최초 계약시)	㈜하나은행	2019-2586-139737 *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현대건설(주)
	중도금 / 잔금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XI 기타(단지여건 등)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유의사항

■ 설계 유의사항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층	2.3M	2.3M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녹색건축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12024-101-0003000	493,288,309,8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1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공사 감리	전기공사 감리	소방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 감리
회사명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럭키기술단	㈜갑인엔지니어링	㈜진전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715,862,800원	584,644,388원	796,275,529원	156,199,12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자	시공자
상호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4층 401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오피스텔 40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번호	110114-0065167	110111-0007909

■ 견본주택안내

구분	약도	비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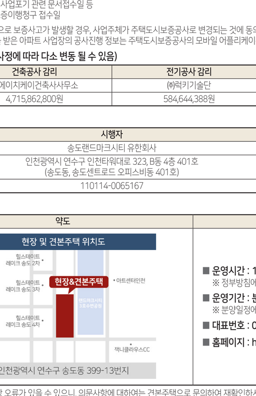	■ 운영시간 :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032-833-0722 ■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lake_songdo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